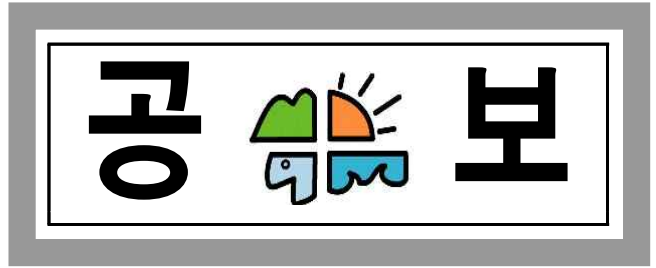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25호 2021년 5월 14일(금)

## 공 고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10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2
- 도시계획도로(중로1-24호선)개설 공사 보상계획공고 ..... 3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공시송달 공고 ..... 6

## 입법예고

- 「속초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 속초시 공고 제2021-54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4일

속 초 시 장

가. 공고목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나. 공고내용

- 1) 구역대상지: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 2) 구역면적: A=7,442m<sup>2</sup>
- 3)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 공람기간: 공고일(신문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033-639-2447)

마. 관계도서: 생략(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

바.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24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 속 초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도시계획도로(중로1-24호선) 개설공사
-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26-3번지 일원
- 라. 사업량 : 도로개설(L=214.0m, B=20.0m)
- 마. 사업기간 : 2020. 6. 26. ~ 2023. 12. 31.
- 바.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 2. 보상대상

- 가. 토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5. 11. ~ 5. 26.
- 나. 열람 및 이의 신청장소 : 속초시청 건설도시과(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보상계획

#####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향측면적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결과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속초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도로(중로1-24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내역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속초시 조양동 1426-16, 1426-5, 1426-3, 1427-3, 1428-2, 1428-1, 1429-1, 1450-6, 1450-8, 1465-1
물건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 등 일체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① 2. 공고기간 : 2021. 05. 14. ~ 2021. 05. 28.

②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관리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식회사 본자○	설악동 246-77번지 외 1필지	불법 증축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폐문 부재

6.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2차 시정명령하오니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033-639-268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5. 14.

## 속 초 시 장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 18호

「속초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5. 6. ~ 2021. 5. 11.(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033-639-2502,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기타 참고사항

○



#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 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1. 5. .

발 의 의 원 : 방원욱의원 외 6인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여비 지급범위 현행화(안 제4조2호)
  - 기존의 「속초시 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1(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별표 2(국외여비지급 기준표) 삭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지급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해당없음
- 2) 관계법령 발취 : 불임

##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여비) ① (생   략)</p> <p>② <u>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의 경우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제4조(여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u></p>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속 초 시 장(직인생략)

1. 자치법규명: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감량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및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강화사업시행을 지원하고,
- 2016년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조정 이후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인한 이용요금 현실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개정(안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사업 선정 협의 기능 추가

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개정(안 제7조)

- 주민지원협의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폐기물의 감량화 사업경비를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법규 제명 개정사항 정비(안 제12조)

- 「속초시재무회계 규칙」 →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라.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한 안내·홍보기간 부여(안 부칙)

- [별표 1]의 사용료 인상은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4. 자치법규안: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주민께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2021년 6월 2일까지 속초시장(환경자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이메일: [pay4@korea.kr](mailto:pay4@korea.kr)

2) 주소: 속초시 방축길 60. 환경자원사업소. 우) 24899

3) 연락처 및 팩스: 639-2578, FAX 635-21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원사업소(639-257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관계법령

4.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회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제4호의 사업선정을 위한 협의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결록

제6조제1항 중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주민복지증진”을 “주민복지증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폐기물감량화”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19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목욕탕			목욕탕+찜질방		
	대 인	소 인	경로우대	대 인	소 인	경로우대
사 용 료	6,500	4,000	5,000	9,000	6,000	6,000

비고

1. “소인”은 만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우대”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지원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5.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사업계획의 협의)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u>&lt;신 설&gt;</u></p> <p>3. (생 략)</p> <p>제6조(기금 조성) ① <u>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u>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7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p>	<p>제4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7조제4호의 사업선정을 위한 협의</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계획의 협의)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의결록</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6조(기금 조성) ① <u>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의 용도) ----- -----.</p>

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주민복리증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폐기물감  
량화-----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  
리에 관한 규칙」-----

-.

## 관계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생략)

③ (생략)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⑦ (생략)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
2. 홍보활동, 지원협의체의 운영, 주민의견수렴 경비
3.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충당금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



# 속 초 시



수신 환경자원사업소장  
(경유)

제목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회신(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환경자원사업소-1341(2021. 4. 7.)호와 관련입니다.
2.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비규제)**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조서 1부. 끝.

## 기 획 예 산 과 장

주무관	교류규제평가 담당	기획예산과장	전결 2021. 4. 12.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420 (2021. 4. 12.)	접수	환경자원사업소-1404 (2021. 4. 12.)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a href="http://www.sokcho.go.kr">http://www.sokcho.go.kr</a>
전화번호	033-639-2216	팩스번호	033-639-2106 / yeeun1071@korea.kr / 비공개(5)